2016. 6. 7. 개정

주류구매전용카드 가맹점 계약서

(2부 작성하여 은행과 가맹점이 각1부씩 보관)

1. 서비스 종류
가. 구매자금 결제 나. 처리결과 조회 다. 계좌잔액 조회

2. 자금의 정산
가. 주류판매에 따른 자금은 소매점상의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어 가맹점의 결제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드립니다.
나. 판매대금은 은행 소정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이체하여 드립니다.
다. 자금의 정산과 관련하여 은행 또는 금융결제원의 전산 장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은행에서는 금융결제 원의 타행환 공동망 규약을 준용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3. 결제계좌
가. 결제계좌는 주류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맹점이 신청한 계좌로 은행의 요구불예금 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나. 결제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가맹점에서 직접 은행에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변경신청 후에는 즉시 변경된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다. 가맹점에서 결제계좌의 변경신청이 없어 변경전 계좌로 입금되거나 변경신청후 변경된 계좌로 입금되어 가맹점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단말기 관리
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단말기는 은행의 제휴사를 통하여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단, 가맹점의 요청에 의하여 무상공급에서 제외되는 물류관리 겸용PDA단말기는 소정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나. 가맹점에 설치된 단말기는 은행 제휴사의 재산인 바, 가맹점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야 합니다.
다. 본 서비스와 관련된 기기의 유지보수는 1년간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무상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부품 실비를 징 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 관련기기가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도난 및 분실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마. 상기 가~라 항에 불구하고, 은행 제휴사와 「단말기공급계약서」 체결시 제휴사와 체결한 계약이 우선적용 됩니다.

5. 서비스제공
가. 은행은 가맹점에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사용과 이에 따른 판매대금의 결제, 그리고 처리결과의 조회업무를 제공 하여 드립니다.
나. 가맹점은 카드의 삽입, 계좌 비밀번호 등을 고객이 직접 단말기에 입력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가맹점에서 대행 하실 수 없습니다. 고객의 거래를 대행하여 비밀 번호 유출 등으로 금융사고 및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시 가맹점에서 구상책임을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6. 가맹점의 의무
가맹점은 본 서비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맹점이 거래 하는 소매업자에 대하여 은행 또는 은행과 제휴관계에 있는 금융기관에서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7. 수수료
가. 은행은 주류구매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로 총 매출금액의 %를 징수합니다.
나. 본 서비스의 용도 이외로 가맹점 고유의 금융거래시(결제계좌에 판매대금이 이체된 후 타 계좌로 이체하는 등) 발생하는 수수료는 은행이 정한 자동화기기 수수료 체계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8.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 은행은 이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적용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가맹점에 개별 통지함과 동시에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용 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밖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
나, 은행은 “가”의 규정에 계약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합니다.
다, 은행은 가맹점이 “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9. 준용사항
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맹점은 본 계약내용과는 별도로 은행의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직불카드 가맹점약관의 관련사항을 준용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되며 가맹점에 특별히 불리한 조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계약내용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은 금융결제원의 관련조항을 우선하여 적용하게 되며 민, 상법 및 상관습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10. 기타
가. 직원에 의한 제반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에서는 만전을 기하셔야 하며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관련법규에 의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장의 양도 또는 사업주의 변경이나 상호변경에 불구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계약내용에 따른 서비스는 계속 유지되며 은행에서는 영업권의 양도 및 승계에 관한 민, 상법상의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가맹점에서 본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단말기 가액을 변상할 수도 있습니다.
라. 본 서비스는 은행과는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또는 금융감독기관의 정책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11. 관할법원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은행이 각1부씩 보관하기로 하며 계약내용에 대하여 상호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가맹점 신청인 (인)

하나은행 지점장 (인)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6-약관-174호(2016.4.18)